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의문

1962년 1월 10일 문화재 보호와 관리의 법률적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6일 문화재위원회가 3개 분과(유형, 무형, 천연기념물), 17명의 위원으로 발족하여 운영된 지 60년이 되었다.

지난 60년 동안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민족 유산이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훼손·멸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유산을 보호하는 버팀목으로서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다해 왔다.

문화재보호법은 그동안 70차례 개정을 통해 시대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오면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나아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제정 당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문화재위원회 발족 60주년을 맞은 올해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하여 유산 보호와 가치를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가유산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국민 통합과 국가정체성의 정수이며 대한민국 헌법상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요체로서 문화국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은 그간 사용해 왔던 유물의 재화적 의미를 강하게 간직한 문화재(財)라는 과거 명칭 대신에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遺産)이란 새 명칭으로 변경 확대하여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 국가유산은 이 땅과 해외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괄하며, 인류 공동의 세계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유네스코 유산 협약에 따라 보존과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은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와 모든 유형·무형의 역사문화자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체제로 확대하여, 앞으로 과학·기술, 산업,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자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총체적인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확충 배치하고 충분한 자원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국가유산 보호의 법적, 행·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2022년 4월 1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일동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u>전영우</u>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전통기술분과 위원장)	<u>신택근</u>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궁능문화재분과 위원장)	<u>박경립</u>	무형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전통예능분과 위원장)	<u>김영운</u>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u>이창규</u>	무형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전통지식분과 위원장)	<u>최종호</u>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장	<u>김영섭</u>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	<u>윤인석</u>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장	<u>박정혜</u>	민속문화재분과 위원장	<u>김양직</u>
사적분과 위원장	<u>이재운</u>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u>김민석</u>